



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 포항시보

제809호 2010. 12. 14(화)

## ◀ 조 려 ▶

- 포항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지원 조례(제1020호) ..... 2
-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21호) ..... 7
-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22호) ..... 10
-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23호) ..... 21

## ◀ 규 칙 ▶

- 포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제537호) ..... 36

## ◀ 훈 령 ▶

- 포항시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규정 일부개정규정(제232호) ..... 50

## ◀ 고 시 ▶

- 환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고시(제2010-104호) ..... 54

회 람									
--------	--	--	--	--	--	--	--	--	--

**조 려**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12월 14일

포항시 조례 제 1020호

**포항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
3.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함
4.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함
5.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함
6. “시민단체”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행위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함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 ①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민단체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 체계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포항시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아동·청소년분야 전문가
-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 3.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 4. 포항시의회 의원
-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 3. 범죄예방사업 실적평가
- 4. 범죄예방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의 연계사업 추진
-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민단체의 요건)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함
- 3. 자체적으로 근무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야 함

② 제1항 이외의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하여 단체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필요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범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시민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포항시지역사회안전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부터 제9조까지)
- 시민단체에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12월 14일

포항시 조례 제 1021호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향토문화의 진흥과 각종 축제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포항시 축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축제를 총괄한다.

- 1. 포항 국제불빛축제
- 2.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
- 3. 그 밖에 시가 위탁하는 문화행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규약의 변경 및 임원 선출
- 2. 소관 축제별 행사계획 심의 확정
- 3. 축제개최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 4.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감사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단 최초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축제행사의 대회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위원회의 사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사무국) ①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되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행사 및 운영경비) 위원회의 행사 및 운영경비는 시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익사업) 위원회는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축제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등)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지역문화관광축제의 추진을 위한 축제추진기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주도로 지역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포항시가 위탁하는 축제행사 범위와 관장사무를 규정(안 제2조)
- 나. 위원장 및 위원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안 제3조)
- 다. 축제의 재원을 명확히 하고 수익사업의 근거를 마련(안 제7조, 안 제8조)
- 라. 산하에 사무국을 구성(안 제6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12월 14일

포항시 조례 제 1022호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를 “포항시”로 하고, “임산부와 출생아”를 “출산장려 및 임산부와 출생아”로 하며,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을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을”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 를 “포항시(이하 ” 시 “라 한다)” 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두 번째 이상 출생아 또는 두 번째 이상 입양영아로 함

제4조 본문 중 “시장” 을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세 번째 이상 출생아” 를 “출산장려금은 세 번째 이상 출생아” 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매월 1인당 2만원 이하로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를 “1명당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4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부모 또는 친권자가 한다” 를 “부 또는 모가 한다. 다만, 부모가 모두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가 한다” 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된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보호자	부		생년월일	
	모		생년월일	
신생아	성명		생년월일	
	보호자와 관계			
	분만의료기관		분만일자	년 월 일
	출생순위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이상( )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H.P	
입금계좌 번호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p>「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장려금, 출생아건강보험료)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와의 관계 :</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b>포항시장 귀하</b></p>				
첨부서류 : 수익자 예금통장 사본1부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구 분	민 원 인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확인사항	신청인 주소 :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	
	지원여부	결정( ) 미결정( )
기관장 확인	읍면동장 직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장려금 신청 대장

연번	신청일자	보호자				신생아		출생신고일	계좌번호	비고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거주기간 (년,월)	성명	생년월일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출산장려금 지급 대장

연번	보호자				신생아		신청일	지급일	입금계좌번호	환수		비고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거주기간 (년,월)	성명	생년월일				사유	환수일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 신청대장

접수번호	출생아					보호자 (부 또는 모)		출생아 건강보험지원부	거주 기간 (년, 월)	직업	비고
	주소	전화 번호	성명	생년 월일	자녀수 (째)	성명	생년 월일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급대장

접수번호	출생아					보호자 (부 또는 모)		보험료 지원액	거주 기간 (년, 월)	신청 일	지급 일	환수		비고
	주소	전화 번호	성명	생년 월일	자 녀 수 (째)	성명	생년 월일					입 금 좌 번호	사 유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 신청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건강보험 신청 아동수	건강보험 미신청 아동수				비고
			소 계	세자녀 미 만	보호자 거 부	기 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누 계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 대상자 진출통보**

동	진출자 명	지 원 아동명	지 원아동 과의관계	생년월일	현주소	진출지 주소	비고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신부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li> <li>2. ~ 3. (생략)</li> <li>4. “건강보험료 지원”이란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시와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li> </ol>	<p>제명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 포항시----- ----- -----출산장려금 및 임신부와 출생아-----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을----- -----.</p> <p>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li> <li>2. ~ 3. (현행과 같음)</li> <li>4.-----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li> </ol>

현행	개정안
<p>5. (생략)</p> <p><u>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u>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의 출생일전 6개월부터 출산 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한 사람</li> <li>2.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세 번째 이상 출생아 또는 세 번째 이상 입양영아.</li> </ol> <p><u>제4조(지원기준)</u>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다음 각 호에 의거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 번째 이상 출생아 또는 세 번째 이상 입양영아에 대하여는 100만원을 일시불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li> </ol>	<p>5. (현행과 같음)</p> <p><u>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u>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모로서,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li> <li>2.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두 번째 이상 출생아 또는 두 번째 이상 입양영아로 함</li> </ol> <p><u>제4조(지원기준)</u>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산장려금은 세 번째 이상 출생아 ----- -----</li> </ol>

현 행	개 정 안
<p>출생아가 다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p> <p>2.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u>매월 1인당 2만원 이하로 3년간 지원할 수 있다.</u></p> <p>3. ~ 5. (생략)</p> <p>6. <u>(신설)</u></p> <p><b>제6조(지원절차) (생략)</b></p> <p>①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은 <u>부모 또는 친권자가 한다.</u></p> <p>② ~ ⑥ (생략)</p>	<p>-----</p> <p>-----</p> <p>-----</p> <p>2. -----</p> <p>-----</p> <p>-----<u>1명당 3년간 지원할 수 있다</u></p> <p>3. ~ 5. (현행과 같음)</p> <p>6. <u>4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b>제6조(지원절차) (현행과 같음)</b></p> <p>① -----</p> <p>-----</p> <p>-----<u>부 또는 모가 한다. 다만 부모가 모두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가 한다.</u></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1. 개정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확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 개정
- 나.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정비 (안 제1조, 제2조)
- 다.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3조, 제4조)
- 라. 행정서식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12월 14일

포항시 조례 제 1023호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를 “포항시” 로 하고, “시, 사업자” 를 “포항시, 사업자”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 를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6. “지구환경보전” 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7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8조 제목 “(언론의 역할)” 을 “(언론 및 민간단체 등의 역할)” 로 하며,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목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 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시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기본계획” 을 “환경보전계획”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기본시책” 을 “환경보전시책”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환경기본계획” 을 “환경보전계획”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2년” 을 “3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24조 다음에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05장 환경정책위원회

제25조를 제34조로 하고,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환경정책위원회)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따라 환경 보전에 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포항시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4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 각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환경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 3.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환경보전관련 사항
-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시의회 의원
- 2.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28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자문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 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
-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

**제3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보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환경보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3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6조제4호에 의거 협의회에서 정하는 판단 기준 및”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한다.

②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은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제25조에 따른 포항시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삭제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포항시 -----  -----포항  <u>시, 사업자</u>-----  -----  -----  -----  -----  -----  -----  -----</p>
<p>제2조(기본이념) ① 시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을 계승 및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2조(기본이념) ①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  -----  -----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정의) (생략)</p> <p>1. ~ 3. (생략)</p> <p>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 <u>기타</u> 사람의 활동에 따</p>	<p>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그 밖에</u>-----</p>

현 행	개 정
<p>라 발생하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 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p>	<p>----- ----- ----- ----- ----- -----</p>
<p>5. (생략)</p>	<p>5.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6. <u>“지구환경보전” 이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4조(시의 책무) ① (생략)</p>	<p>제4조(시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1. ~ 6. (생략)</p>	<p>1. ~ 6. (현행과 같음)</p>
<p>7.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에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②</p>	<p>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②</p>

현행	개정
<p>(생략)</p> <p>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시설에 대하여 투자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현행과 같음)</p> <p>③ ----- ----- <u>그</u> <u>밖에</u> ----- -----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8조(언론 및 민간단체 등의 역할)</p> <p>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포항시환경기본계획</p>	<p>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포</p>

현 행	개 정
<p>(이하 “환경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환경기본계획</u>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2. (생략)</p> <p>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u>환경기본시책</u> 및 사업계획</p> <p>4. (생략)</p> <p>5. <u>기타</u>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p> <p>③ 시장은 <u>환경기본계획</u>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u>환경기본계획</u>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u>환경기본계획</u>과의 배치여부를 확인 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p>	<p><u>항시 환경보전계획</u>(이하 “<u>환경보전계획</u>” 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시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p> <p>② -----<u>환경보전계획</u>----- ----- 1.~ 2. (현행과 같음)</p> <p>3. ----- -----<u>환경보전시책</u>-----</p> <p>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u> ----- -----</p> <p>③ ----- <u>환경보전계획</u>----- ----- -----</p> <p>④ ----- <u>환경보전계획</u>----- ----- -----</p> <p>⑤ ----- ----- <u>환경보전계획</u>----- ----- -----</p>

현 행	개 정
또는 변경 하여야 한다.	-----
<p>제13조(자원의 순환적이용등의 추진)</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u>기타</u>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p>	<p>제13조(자원의 순환적이용등의 추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u>그 밖에</u>-----</p> <p>-----</p>
<p>제19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u>2년</u>마다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1. ~ 2. (생략)</p> <p>3. <u>기타</u>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p>	<p>제19조(환경백서) ① -----</p> <p>-----</p> <p>-----</p> <p>-----<u>3년</u>-----</p> <p>-----</p> <p>②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에</u> -----</p> <p>-----</p>
<p>&lt;신 설&gt;</p>	<p>제05장 환경정책위원회</p>
<p>&lt;신 설&gt;</p>	<p>제25조(환경정책위원회) 시장은 「<u>환경 정책기본법</u>」 제37조에</p>

현 행	개 정
<p>&lt;신 설&gt;</p>	<p>따라 <u>환경보전에 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포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둘 수 있다.</p> <p><u>제2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 4에 따른 <u>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 각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li> <li>2. <u>환경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u></li> <li>3. <u>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환경보전관련 사항</u></li> <li>4. <u>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u></li> </ol>
<p>&lt;신 설&gt;</p>	<p><u>제2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u>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u></p>

현 행	개 정
<p data-bbox="411 868 525 899">&lt;신 설&gt;</p> <p data-bbox="411 1266 525 1296">&lt;신 설&gt;</p>	<p data-bbox="775 304 1158 334">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p> <ol data-bbox="775 364 1158 788"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775 364 958 395">1. 시의회 의원</li> <li data-bbox="775 419 1158 560">2. <u>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u></li> <li data-bbox="775 590 1158 788">3. <u>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u></li> </ol> <p data-bbox="748 868 1158 1066"><u>제28조(임기)</u>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 data-bbox="775 1096 1158 1187">② <u>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 data-bbox="748 1266 1158 1463"><u>제29조(위원의 해촉)</u>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data-bbox="775 1493 1158 1745"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775 1493 1158 1584">1. <u>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u></li> <li data-bbox="775 1608 1158 1745">2. <u>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자문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u></li> </ol>



현 행	개 정
<p data-bbox="411 701 525 733">&lt;신 설&gt;</p> <p data-bbox="411 1153 525 1185">&lt;신 설&gt;</p> <p data-bbox="411 1266 525 1298">&lt;신 설&gt;</p>	<p data-bbox="773 306 1162 395">3. <u>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u></p> <p data-bbox="773 419 1162 508">4. <u>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u></p> <p data-bbox="773 532 1162 620">5. <u>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u></p> <p data-bbox="748 701 1162 842"><b>제30조(위원장의 직무 등)</b> ① <u>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p> <p data-bbox="773 870 1162 1072">② <u>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 data-bbox="748 1153 1162 1294"><b>제31조(회의)</b> ① <u>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u></p> <p data-bbox="773 1322 1162 1576">② <u>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 data-bbox="773 1604 1162 1745">③ <u>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현 행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b>제25조(시행규칙) (생략)</b></p>	<p>다.</p> <p>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32조(간사 등) ①</b>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환경보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환경보전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p> <p><b>제33조(수당 등)</b>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b>제34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b></p>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2010. 2. 4 법률 제10032호)됨에 따라 환경 각 분야별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는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환경시책 업무 추진에 기여함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기간을 상위법령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에 역할을 부여하여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시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제1항)
- 환경보전에 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환경정책위원회 설치와 기능 등을 신설함.(안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규 칙**

포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  
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12월 14일

포항시 규칙 제 537호

**포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포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중 “(징계양정의 기준)” 을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징계혐의자의” 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 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으로 하고, “기타” 를 “그 밖의” 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 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사건” 으로 하고, “다만, 청렴의무 위반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1의2와 별표 1의3을 각각 적용한다.” 를 삭제한다.

제2조제2항 중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을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징계의결” 을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 이라 한다)” 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을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 3” 을 “별표 2” 로 하고, “징계를 의결하여야” 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별표 3” 을 “별표 2” 로,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징계의결” 을 “징계의결등”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 중 “징계사건” 을 “징계등 사건”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별표 4” 를 “별표 3”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 4” 를 “별표 3”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징계의결서” 를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의결서” 를 “징계등 의결서” 로 한다.

제7조 제목 중 “징계의결” 을 “징계의결등”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징계의결” 을 “징계의결등” 으로 하고, “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 을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으로 하며,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 동항 단서의 경우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를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4와 별표 5를 각각 적용한다.”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징계의결” 을 “징계의결등” 으로 하고, “징계” 를 “징계등” 으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로 하며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을 “별표 2에 따라” 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징계의결” 을 “징계의결등” 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준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1의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

※ 비고

-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련)

업무외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 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중요사항	1	2	3	4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련)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별표 4]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7조 관련)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300만원 이상	중징계					

[별표 5]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7조 관련)

유 형 별		처리기준	비 고
음주운전으로 운전 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	경 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중징계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 경감사유등을 정함으로서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1의2와 별표 1의3을 각각 적용한다.</p>	<p>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 이라 한다)혐의자에 대한 ----- -----그 밖의 ----- -----징계 기준 및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사건 ----- ----- ----- ----- ----- <u>&lt;단서 삭제&gt;</u></p>
<p>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p>	<p>②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 -----</p>

현행	개정안
<p>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 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엄중문책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 ----- ----- ----- ----- ----- -----</p> <p>③ ----- ----- ----- -----<u>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u>----- ----- -----</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u>징계의결등</u> 요구권자는-----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3조(비위행위자의 감독자에 대</p>	<p>제3조(비위행위자의 감독자에 대</p>

현 행	개 정 안
<p>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u>별표 3</u>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u>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별표 3</u>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나 아니하는 자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징계 의결을 하지</u>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 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u>징계사건</u></li> <li>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u>징계사건</u></li> <li>3. (생 략)</li> </ol>	<p>한 문책기준) ① ----- ----- ----- -----<u>별표 2</u>----- ----- -----<u>징계의결등을 하여</u> <u>야</u>-----</p> <p>② ----- --<u>별표 2</u>----- -----<u>각 호의 어느 하나</u>----- -----<u>징계의결등</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 -----<u>징계등 사건</u></li> <li>2. ----- -----<u>징계등 사건</u></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제4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u>별표 4</u>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공</p>	<p>제4조(징계의 감경) ①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u>별표 3</u>----- ----- -----</p>

현 행	개 정 안
<p>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 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p>	<p>----- ----- ----- ----- ----- ----- ----- ----- ----- ----- -----</p>
<p>1. ~ 4. (생략)</p> <p>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u>별표 4</u>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p>
<p>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u>징</u></p>	<p>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 ----- ----- ----- 「지</p>

현행	개정안
<p><u>계의결서</u>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u>징계의결서</u>의 의결 주문난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기재한다.</p> <p>제7조(<u>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u>) ① <u>징계의결요구권자</u>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u>징계의결</u> 요구서에 <u>징계의결</u> <u>요구권자의</u>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 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 조 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u>징계의</u>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p>	<p><u>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u> 제12조제2항에 따른 <u>징계등 의결서</u>(이하 “<u>징계등 의결서</u>”라 한다)-----</p> <p>② ----- ----- ---<u>징계등 의결서</u>----- ----- ----- -----</p> <p>제7조(<u>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u>) ① <u>징계의결등</u> ----- ----- ----- <u>각 호</u>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u>징계의결등</u> 요구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u>징계의결</u> 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u>징계의결</u> 등 ----- ----- ----- <u>적고</u>, <u>징계부가금</u>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u>징계의</u> 종류를 기</p>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의 경우에 <u>징계의결요</u> 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u>징계사</u> 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u>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u>에 <u>별표 3의</u>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뇌우치는 정도,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붙여야 한다.</p> <p>③ <u>징계의결요구권자</u>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p>	<p><u>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4와 별표 5를 각각 적용한다.</u></p> <p>② ----- <u>징계의결등</u> ----- 징계 등 ----- -----<u>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u>-----<u>별표 2에 따라</u>----- ----- ----- ----- ----- -----</p> <p>③ <u>징계의결등</u> ----- ----- ----- ----- ----- -----</p>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개정으로 금품 및 공금 등 청렴의무와 관련된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징계부가금』 제도가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고, 금품·향응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액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 등에 따라 『징계부가금』 을 부과 의결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기준 마련

-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안 제2조)
- 임용권자는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부가금 기재(안 제7조)
- 징계부가금 부가기준 신설(안 별표 1의2)

○ 「징계부가금」 신설에 따른 용어 정리(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6조, 제7조)

- ‘징계양정의 기준’ 을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으로 개정
- ‘징계협이자’ 를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 이라 한다) 협이자’ 로 개정
- ‘징계의결’ 을 →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이하 ‘징계 의결 등’ 이라 한다)’ 로 개정
- ‘징계의결요구서’ 를 → ‘징계의결 등 요구서’ 로 용어 등 정리

**훈 령**

포항시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12월 14일

포항시 훈령 제 232호

**포항시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규정 일부개정규정**

포항시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장” 을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잔여기간” 을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 을 “1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평생학습과장” 을 “업무담당과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선발기준 등) ① (생 략)</p> <p>② 심사평정은 100점 만점에 거주사실 30점, 생활정도, 30점, 학교기준 25점, 성적기준 10점, 기타 5점을 적용한다.</p> <p>③ 입사기간은 <u>당해</u> 학년(1년)으로 하며,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대학교 기숙사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는 제외하며 1가구당 1명에 한하여 선발 할 수 있다.</p> <p>④ (생 략)</p>	<p>제3조(선발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그 밖에</u>-----</p> <p>③ -----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입사신청) (생 략)</p> <p>1. ~ 4. (생 략)</p> <p>5. <u>기타</u> 증빙서류 등</p>	<p>제5조(입사신청)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의</u> -----</p>
<p>제7조(퇴사처분 등) ① <u>시장</u>은 입사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사자격을 박탈한다.</p> <p>1. (생 략)</p> <p>2. 군 입대 및 <u>기타</u> 사유로 휴직하고자 하는 자</p>	<p>제7조(퇴사처분 등) ① <u>포항시장</u> (이하 “시장”이라 한다)-----</p> <p>-----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그 밖의</u> ----- -----</p>

현 행	개 정 안
<p>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원 시 예비후보자 순으로 입사한다. 다만, 이 경우의 입사기간은 <u>잔여기간</u>으로 한다.</p>	<p>② ----- ----- -----<u>남은 기간</u>-----</p>
<p>제9조(간사와 서기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u>1인</u>을 둔다.</p> <p>② 간사는 <u>평생학습과장</u>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p> <p>③ (생략)</p>	<p>제9조(간사와 서기 등) ① ----- -----<u>1명</u>-----</p> <p>②-----<u>업무담당과장</u>----- ----- ---</p> <p>③ (현행과 같음)</p>

**1.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향토생활관 입사생선발 업무담당부서의 변경과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추어 자구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부서변경 (안 제9조제2항)

나.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부 수정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0 - 104호

**환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고시**

우리시 환호동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환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 0 1 0. 12. 14.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 명 칭 : 환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포항시 북구 환호동 110번지 일원
- 면 적 : 35,855m<sup>2</sup>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포항시장(북구청장)
- 주 소 : 포항시 북구 관청길 11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 고시일로부터 ~ 2012. 12. 31

5. 사업시행계획 고시일 : 2010. 12. 14.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7. 건축물의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환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의함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해당없음.

9.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별첨

10. 사업시행계획서는 포항시 북구청 건축지적과(☎054-240-7493)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